

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안이유

2006. 12.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 되는 복식 부기 전산인력, 소나무 재선충 확산 방지 전담인력, 동학농민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전담인력에 대하여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현장승인 권고에 의거 2008. 12. 31일 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별표 2에 한시정원 직급별 정원을 명시하고자 함

### 2. 주요골자

- 존속기한연장 : 2006. 12. 31 → 2008. 12. 31
- 존속기한 연장 대상
  - 복식부기 전담인력 2명 (7급1명, 8급1명)
  - 소나무 재선충확산방지 전담인력 1명(7급)
  - 동학농민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전담인력 1명(8급)

### 3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

### 4. 검토의견

- 복식부기 전담인력 2명
- 소나무 재선충 확산방지 전담인력 1명
- 동학농민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전담인력 1명을 현재 동 업무가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업무이므로
- 2008. 12. 31일 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여야 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옳은 것으로 사료 됩니다.